

용인시 공수의 여비 조례

제정 1996. 2. 20 조례 제220호
개정 1996. 3. 1 조례 제 2호 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2005. 10. 5 조례 제73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여비정액) 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국내여비지급 구분 및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3조(준용)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33호>

이 조례는 일반규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